



제42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과징금 규정 정비 등 「행정기본법」과의 정합성 확보〉

■ 유상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305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은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5
3. 관계기관 의견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유상범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 2025. 2. 20.
3. 회 부 일 : 2025. 2.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6조, 제10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⑭ 제5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사유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사유는 「행정기본법」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해당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행정기본법」상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를 명시하며, ⑮ 제6조(이행강제금) 및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임(안 제5조의2, 제6조 및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	제5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 ----- ----- ----- ----- ----- ----- -----

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
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
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
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일시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과징금 납부의무자 또는 동거 가
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생 략)

③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

연기하
거나 -----.

1. 과징금 납부의무자 또는 동거 가
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과징금을 한꺼번
에 징수할 수 있다.

1.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
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
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
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

<u>에 필요한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u> 3. <u>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u> ④ (생략) 제6조(이행강제금) ①·② (생략) ③ <u>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u><신설></u>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 ③ (생략) ④ <u>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u> ⑤ (생략)	<u>는 행위를 한 경우</u> 3. <u>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u>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u>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u>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이행강제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5조제4항·제5항 및 제7항-----. ④ <u>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u>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5조제4항·제5항·제7항 및 제6조제2항·제4항-----. ⑤ (현행과 같음)
--	--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¹⁾ 2021년부터 행정기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음²⁾.

「행정기본법」 제3장³⁾에서는 행정작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 인허가의제, 공법상 계약, 과징금, 행정상 강제 등의 일반적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바, 주요 행정 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들 사이에 유사하거나 공통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제5조의2) 및

1) 「행정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행정기본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 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나, 그동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개별법마다 유사한 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하여 수백 개의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학설·판례로 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 행정 법령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법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인허가의제 제도 등 유사한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법령이나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권익보호 수단에 더하여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3) 「행정기본법」 제3장(행정작용)은 제1절(처분), 제2절(인허가의제), 제3절(공법상 계약), 제4절(과징금), 제5절(행정상 강제), 제6절(그 밖의 행정작용), 제7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로 구성되어 있음.

이행강제금(제6조 및 제10조)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어 규정되거나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행정 법제도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과 「행정기본법」을 병행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를 고려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제5조의2) 관련

현행법 제5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 등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⁴⁾ 제5조2에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이 해당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⁵⁾.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개정안은 제5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관련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사유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하고, 해당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행정기본법」상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를 명시하려는 내용임6).

< 현행법, 개정안, 행정기본법령상 사유별 비교 >

구분	현행법	개정안	행정기본법령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사유	제5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5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행정기본법」 제29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일시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과징금 납부의무자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 납부 또는 담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납부기한의 연장” 자구를 “납부기한의 연기”로 변경하고 있음.

구분	현행법	개정안	행정기본법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u>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u> 2. <u>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u> 3. <u>과징금을 일시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u> 4. <u>과징금 납부의무자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u> 5. <u>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u>과징금 납부의무자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u> 2.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u>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u> 2. <u>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u> 3. <u>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u> 4. <u>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u>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 사유	제5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③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5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③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③ 행정청은 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u>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u>

구분	현행법	개정안	행정기본법령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채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⁹⁾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현행법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 “과징금 납부의무자 및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이미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음.

7)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원인으로 현행법은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행정기본법」은 ‘재해 등’으로 정하고 있어 ‘도난’의 명시여부에 차이가 있으나, 해당 사항은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원인에 대한 예시으로써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8)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② 법 제2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9) 현행법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를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변경하여 그 표현은 다르나 현행법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비추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해당 사유에 대해서만 별도로 정하고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변경하는 것은 법 개정 시의 효율성 및 행정법 체계의 통일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 제5조의2제3항제4호에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 징수할 수 있는 사유로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는데¹⁰⁾, 그에 포섭되는 않는 개정안 제5호의2제1항제1호의 “과징금 납부의무자 및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해소된 경우에도 과징금 일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법의 체계에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¹¹⁾.

나. 이행강제금(제6조 및 제10조) 관련

현행법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과징금에 관한 규정인 제5조제4항부

10) 추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칙에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 다만, 현행법상 “과징금 납부의무자 및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해소된 경우는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를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¹²⁾).

준용하는 규정들은 물납 허용, 징수권자, 하위법령 위임규정 등인데, 이와는 별도로 「행정기본법」 제31조에서는 이행강제금에 가중·경감, 이행강제금 부과 전 문서로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관련하여 추가로 준용하는 사항 >

현행법	개정안	행정기본법
제6조(이행강제금) ③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6조(이행강제금) ③ ----- ----- 제5조제4항·제5항 및 제7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정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 1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이행강제금)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일(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 ③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과징금)**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개정안	행정기본법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5조제4항·제5항·제7항 및 제6조제2항·제4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개정안은 개정안을 통해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6항과 중복되는 현행법 제5조제6항을 준용 규정에서 삭제하고 있음.	3. 그 밖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해당 사항들은 현행법에 규정되지 아니하여도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청이 따라야 하는 사항이나¹³⁾, 이를 현행법에서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이해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13)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행정법제를 정비하는 개정 또한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일 법률 내에서 「행정기본법」과의 조응관계에 따라 중복규정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하고 중복되지 않는 규정은 남겨 두는 개정방식은 오히려 국민으로 하여금 개별법률과 「행정기본법」을 병행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바 개정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대한변호사협회는 개별 법률에 이미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행정기본법」 규정을 끌어다 기존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없고, 체계적으로 원만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64